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번 호	202
-------------	-----

제출년월일 : 2006. 2. 7  
제 출 자 : 최광렬의원외 5인

###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본문 중 어문규범과 명칭 등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맞도록 표기하고,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본문 중 어문규범과 명칭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12조)
- 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안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3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50조, 제66조의2제3항, 제67조제2항)
- 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안 제7조의2, 제9조제3항, 제9조의2, 제11조의2, 제14조의2, 제15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39조의2, 제48조제6항, 제50조의2, 제52조제4항, 제65조제4항, 제65조의2, 제66조의2제4항 · 제5항 · 제6항, 제69조제4항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타시 · 도,자치구의회 회의 규칙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의회사무국으로”를 “의회사무국에”로 한다.

제3조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

제5조중 “주민”을 “사하구민”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의 연간 회기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2일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휴무일이면 다음날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의장 · 부의장의 겸직제한)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이 다른직(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가진 경우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된 날부터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3항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13조중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추가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회의의 발의에 대하여는 질의 ·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5조 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본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휴회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9조 본칙중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를 “구청장이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의원이 발의한다”로 하고, “의안제출은”을 “의안 제안은”으로 하며, 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본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

1. 의장, 임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 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7. 의원의 청가(5일 초과의 경우를 말한다)에 관한 건
8.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10.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2.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변경의 건
13.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4. 본회의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5.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중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의원총회의 협의를 거친 경우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질의, 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토론은 질의 종료후에 하며, 상정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의 종결전까지 의장에게 토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표결의 장소) 모든 안건의 표결은 본회의는 의장석,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석에게 표결한다.

제41조제2항중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앞에 “중요한 안건으로써”를 삽입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거를 제외한 일반안건은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회의록의 작성기준 및 발간·보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위원회회의 등의 장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회의실로 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과의 회의 또는 관할구역내의 현지에서 개의할 수 있다.

제5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24시간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61조 내지 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의2제3항중 “24시간 전까지”를 “48시간 전까지”로 하며, 동조 제4항,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문일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 질문자수의 범위와 질문순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며, 질문방법과 질문순서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통지한다.
- 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3항의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제67조제2항중 “10일 이내에”를 “5일 이내에”로 한다.

제6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회기중에 의원이 사직할 경우 본인이 본회의에서 원활 경우 연설을 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등록) ..... .... <u>의회사무국으로</u> .....	제2조(등록) ..... .... <u>의회사무국에</u> .....
제3조(의석 배정) ① ..... <u>운영위원회</u> .....	제3조(의석 배정) ① ..... <u>의회운영위원회</u>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선서) ..... <u>주민</u> ... ..... <u>주민</u> .....	제5조(선서) ..... <u>사하구민</u> ... ..... <u>사하구민</u> .....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u>의원이 사고로 인하여</u> <u>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u> <u>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단서 신설)</u>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u>의원이 사고로 인하여</u> <u>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u> <u>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다만 의원이 체포, 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 사본을</u> <u>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u>
(신설)	제7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u>의장은</u> <u>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u> <u>의회의 연간 회기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할 수</u> <u>있다.</u>
제9조(의장 · 부의장의 임기) ① (생략) ② <u>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u> <u>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임기만료</u> <u>전 5일이내에 집회하여 차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u> <u>한다.</u> <u>(신설)</u>	제9조(의장 · 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u>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최초</u> <u>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u> <u>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2일전에</u> <u>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휴무일이면 다음날로 한다.</u> ③ <u>전국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u> <u>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한다.</u>
(신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u>의장이 사고가</u> <u>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u>
(신설)	제11조의2(의장 · 부의장의 겸직제한) <u>의장 또는 부의장</u> <u>보궐선거에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이 다른직(부의장,</u> <u>상임위원장)을 가진 경우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u> <u>선출된 날부터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u>
제12조(회기) ① ~ ② (생략) ③ ..... <u>날로부터</u> .....	제12조(회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날부터</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 <u>(신설)</u>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
	제14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회의의 발의에 대하여는 질의 ·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휴회)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한다.  ..... 의안제출은  (신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구청장이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의원이 발의한다.  ..... 의안제안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② (생략)  (신설)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 1. 의장, 임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선거 2. 의장, 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7. 의원의 청기(5일 초과의 경우를 말한다)에 관한 건 8.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10.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2.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변경의 건 13.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4. 본회의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5.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중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의원총회의 협의를 거친 경우
제2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질의 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의결로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 ③ (생략)  (신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토론은 질의 종료후에 하며, 상정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의 종결전까지 의장에게 토론 신청을 하여야 한다. <u>제30조의2(표결의 장소)</u> 모든 안건의 표결은 본회의는 의장석,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석에서 표결한다.
제41조(표결방법) ① (생략)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  (단서 신설)	제41조(표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요한 안건으로써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 다만 선거를 제외한 일반안건은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⑤ (생략)  (신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⑤(현행과 같음) ⑥ 회의록의 작성기준 및 발간·보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  (단서 신설)  (신설)	제50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 .....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생략)  (신설)	제50조의2(위원회회의 등의 장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회의실로 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과의 회의 또는 관할구역내의 현지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 ~ ③ (생략)  (신설)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24시간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6조의2(구정에 관한 질문) ① ~ ② (생략) ③ ..... ..... 24시간 전까지 .....	제55조(결산의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u>제5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u>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61조 내지 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의2(구정에 관한 질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48시간 전까지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④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p>
(신설)	<p>⑤ 질문자수의 범위와 질문순서는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며, 질문방법과 질문 순서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통지한다.</p>
(신설)	<p>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3항의 질문 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p>
제67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생략) ② ..... 10일 이내에 .....	제67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5일 이내에 .....
제69조(사직) ① ~ ③ (생략) (신설)	<p>제69조(사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기중에 의원이 사직할 경우 본인이 본회의에서 원활 경우 연설을 하게 할 수 있다.</p>